

# 안전보건위원회 규정

2022. 03. 29.

# 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안전보건위원회규정

**제1조 (목적)** 본 규정은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의무와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보건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3조 (구성)**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  
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 
③ 위원에는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포함하되, 1명 이상의 안전보건 전문 이사가 참여하여야 한다.

**제4조 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 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  
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 (위원의 의무)** ① 위원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  
② 위원은 재임기간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6조 (위원회의 회의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  
② 위원회의 회의는 [분기1회] 소집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 
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시, 장소, 소집 목적 및 안건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 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7조 (심의·의결 사항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❖ [매년초] 안전보건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

ㄱ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방침, 목표에 관한 사항

ㄴ. 전사차원의 안전·보건 및 품질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

→ 구성인원의 역할 및 투자, 인력 양성계획 등 포함

ㄷ. 안전·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사항

ㄹ.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

❖ [매분기] 안전보건위원회 심의·의결 사항

ㄱ.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점검 및 품질관리 결과에 관한 사항

ㄴ.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
ㄷ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심의·의결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사항

→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및 이행 현황 포함

ㄹ. 유해위험요인 확인/점검, 개선 절차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

ㅁ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관한 사항

ㅂ. 협력회사 안전보건 평가기준/절차 마련 및 이행에 관한 사항

ㅅ. 안전보건교육 실시 되었는지의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

ㅇ. 급박한 위험시 작업중지/대피/보고 등 대응절차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

ㅈ. 안전보건 관련 규정의 수정·보완에 관한 사항

ㅊ. 그 밖에 회사의 안전보건 및 품질관리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보건전담조직(본사)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안전보건전담조직(본사)은 제2항의 개선 요구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심의·의결 방법)**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은 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위원회는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**제9조 (보고의무)** 위원회는 심의·의결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고, 승인사항에 관하여는

승인받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간사)** ① 간사는 안전보건전담조직의 직원으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총괄하고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안전에 관한 제안 설명은 간사가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회의록에는 상정 안전명과 주요 논의내용을 기록한다.

**제11조 (기타 의견청취)**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하여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보고를 받거나,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12조 (규정의 개폐)** 이 규정의 개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.

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